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47 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이학영·강득구·정태호

이춘석 • 안호영 • 정준호

임호선 · 김재원 · 김교흥

이정문 • 한정애 • 이병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12월 3일,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이를 핑계로 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로 인해 수많은 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장악을 시도하고,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음. 이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명백히 부당한지시였음에도 「군형법」 및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것만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군 강령에 큰 혼란을 야기했음.

그 결과로 직접적인 '항명'에 이를 수 없었던 수많은 군인이 '내란 죄'에 의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에 직면해 있음. 이에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규에 반하는 사항이거나 일반 적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등 군 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명령일 경우, 또한 직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인 업무지시 등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5조). 법률 제 호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 중 "직무상"을 "정당하고, 직무상 명령의 범위에 속하는"으로, "복종하여야"를 "한하여 복종하여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명령 복종의 의무) 군인은	제25조(명령 복종의 의무)
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<u>직무</u>	<u>정당</u>
<u>상</u> 명령에 <u>복종하여야</u> 한다.	하고, 직무상 명령의 범위에 속
	<u>하는</u> <u>한하여 복종하여야</u>